

「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1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0월 19일

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문화체육관광국장 박 은 희

나. 제안이유

-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시장에게 위임한 것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(안 제1조)
- 교육 시간에 관한 사항(안 제2조제1항)
- 교육 불참자 대리인 출석에 관한 사항(안 제2조제2항)
- 교육통지서 발송에 관한 사항(안 제2조제3항)
- 교육의 유예 및 면제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규칙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위임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상위법 위임 사항을 반영 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상위법 위반 사항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